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16702(본소), 2016다1671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1. A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2. B

원고, 상고인 3. C

4. D

판결 선고 2019. 10. 31.

원 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18. 선고 2014나32467(본소), 2015나11771 (반소)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에 대한 피고(반소원고)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반소피고) A, E, 망 F의 소송수계인 AP, 원고 B, C, D의 상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C, D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E, 망 F의

소송수계인 AP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상고비용 중 위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E, 망 F의 소송수계인 AP, 원고 B, C,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였던 I 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는 매매대금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7. 5. 18.부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I 이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I 의 인식을 피고의 인식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다음, 피고가 2010. 11. 21. 적법하게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AW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I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그 매수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을 결의·추인하였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2010. 11. 21.에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부당이득의 악의의 수익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E의 컨설팅계약의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E과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R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컨설팅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매매대금이나 피고를 사실상 대표하여 피고의 사무를 집행한 I에게 교부한 매매대금은 모두 피고에게 지급되었거나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중 공제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 A, B(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의 보조참가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와 원고 A 등이 G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가 G에 위 손해배상채무 중 416,934,531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A 등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할 뿐 위 변제금 상당액이 곧바로 피고가 원고 A 등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I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권한을 I에게 위임한다'라는 종중결의서를 위조하여 2006. 5. 2. 이 사건 각 토지 외 3필지 토지를 X, 원고 A, B, 망 F에게 매매대금 19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X의 공동매수인의 지위는 원고 C, D, E에게 이전되었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A 등은 2007. 5.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자신들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매매잔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 앞으로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단, 원고 B의 경우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는 남편인 AU이다).

다) 피고는 2010. 7. 5.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원고들 및 G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라) G은 2013. 6. 19. I의 불법적인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I, R,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6813호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G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A 등 명의의 등기를 신뢰하고 원고 A에게 돈을 대출하여 347,905,014원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 B의 남편인 AU에게 돈을 대출하여 278,092,879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G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625,997,893원(=347,905,014원 +278,092,879원)을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이후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위 제1심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마) 원고 B은 2014. 6. 23. 가집행이 붙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AV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경매절차에서 G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416,934,531원을 배당받았다.

2)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G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 A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하다고 믿고 이를 담보로 원고 A 등에게 대출을 하였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 상실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G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와 원고 A 등의 G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가 G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와 원고 A 등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데 대하여 원고A 등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A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G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원고 A 등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러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동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G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실제 그 손해배상채무 중 416,934,531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변제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 A 등은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G에 부담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가 피고의 위 변제액만큼 소멸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G에 변제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416,934,531원은 피고가 원고 A 등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에서 공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위와 같은 공제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경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원고 A 등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지 못하므로, 피고는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공평의 이념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G에 변제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 416,934,531원은 피고가 원고 A 등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A, B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C, D, E, 망 F의 소송수계인 AP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